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 . .<br>(제 회) |      |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
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국토교통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 . .   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810호, 2026. 6. 16. 공포, 12. 17. 시행)되어 토지·물건의 인도·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이행기간 등을 정하는 한편, 보상 관련 통지를 우편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토지보상법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통지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는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3항·제5항·제6항 및 제15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함(안 제3조의2).
- 나.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·이전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,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함(안 제47조의2).
- 다.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되, 최초 부과 시에는 위

반행위의 동기, 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결과 및 의무이행 노력 등을 고려하여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(안 별표 3).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3조의2 및 제4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)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지받을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(「행정절차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에 관하여는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3항, 제5항, 제6항 및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.

제47조의2(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) ① 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

(제47조의2제1항 관련)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법조문   | 이행강제금 금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법 제43조에 따른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89조의2 | 1,000만원  |
| <p>비고</p> <p>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최초 부과 시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동기, 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결과 및 위반행위 이후의 의무이행 노력 등을 고려하여 위 부과기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.</p> |          |          |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<u>제3조의2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)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지받을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(「행정절차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에 관하여는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3항, 제5항, 제6항 및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.</u></p> 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<u>제47조의2(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) ① 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</u></p> <p><u>②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| (044) 201 - 3409 |